

VI. 시사점 및 결론

- 여전법 제3조와 제19조에 명시된 신용카드 수납 거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금지에 대한 완화 및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
 - 여전법 조항의 개선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.
 - 또한 제Ⅲ장 해외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및 지급수단별 가격차별화를 허용하는 추세
 - 마지막으로 지급수단의 선택은 소비자의 효용의 증대도 가져오는 만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음.
 - 김재진(2008)도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³⁸⁾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
-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하가 필요
 -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인 2.22%보다 낮은 수준
 - 프랑스(0.7%), 호주(0.8%), 덴마크(0.9%)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% 미만이며 나머지 국가도 2.0%를 넘지 않음.

38) 미국과 영국에서도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가 시행중이며 미국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

<표 10>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

(단위: %)

국가	수수료
프랑스	0.70
호주	0.80
덴마크	0.90
벨기에, 스페인, 영국, 네델란드, 이탈리아, 독일	1.50~1.70
미국, 캐나다	2.00
스위스	2.80

자료 : 한국은행(2010)

- 과도한 수수료는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신용카드시장을 왜곡시켜 신용카드시장의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.
-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격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.
 - 신용카드사가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모두 수수료 협상에서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음.
-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가맹점수수료는 상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- 종신보험, 건강보험, 연금보험 등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.2%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.
-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직불카드 등 카드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회사도 카드 수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